규제영향분석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목 차>

1.사고대비물질 신규 지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시항	소관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이름	정민선
	담당부서 (과)	화학안전제도개선 TF	작 성	직급	전문경력관 가군
	국장	박봉균	자	연락처	043-830-4381
	과장	윤이		이메일	mjung82@korea .kr

2025. 06. 0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사고대비물질 신규 지정				
기본	2.규제조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별표 1]				
정보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5의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6.09~2025.06.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 현재도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화재·폭발 등의 물리적위험성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음에도 인체만성으로만 분류되어 완화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사고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추가지정이 필요함 ○ (정부개입 필요성)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개입이필요 - 화평법·화관법 개정('24.2)에 따라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따라 인체급성·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분류하고, 관리수단을차등화하면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위험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3종을 사고대				
	7.규제내용	○ 당초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이관하여 제정하고, ○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으로 인체만성유해성으로만 분류되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사고 위험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사고대비물질(3종) 취급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관련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 사업자				

			<u>.</u>	유 형		(인원수	또는 규	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사고 발생이 이력이 있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으로 완화된 관리기준 적용을 받게 되는에 대해 사고 위험성과 피해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써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분영향을 최소화			되는 물질 관리함으로				
					비용	편익			비용
		피규기			593.21			59	93.21
	10.비용편익분석	피규제지 정성:							
규제의 적정성	(단위:백만원)	주요니							
	11.영향평가	기술영	병향평기	ŀ	경쟁영형	향평가	중	기영형	향평가
	여부	해 5	당없음		해당입	었음 		해당없	ໄ음
기타	12.규제일몰제	하는 규제 일몰설정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예외기준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여부기준 5. 경제화동에 지저여향은 즈느 교제			미해당 해당 미해당				
		세부기준	7. 한시 검토가		목적을 위한 규 한 규제	'제이거나 =	수기석인	<u>) </u>	
		일몰설	정여부		일몰.	조문		연장	여부
		미설	설정						
		일몰	유형		일몰설 [:]	정기간		일몰	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593.21	0	71.74
15.규제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대비표〉

물질관리
: 대비물질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화관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개정) 추가지정 3종은 화재·폭발과 대량 유·누출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 시 인체만성유해성으로만 분류(스티렌, 1,3-부타디엔)되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 (자일렌)되므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확보가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사고위험과 대량 유·누출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현행	현행 개정안		
규제대안1	내용	대상물질	유독물질 (% 이상)	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 물질	
	네 ㅎ	자일렌	85%	유해성물질에서 제외	85%	
		스티렌	10%	10% 이상(만성유해성만)	25%	
		1,3-부타디엔	0.1%	0.1% 이상(만성유해성만)	25%	
	대안명	유해성물질로	관리			
			현행	개정안		
규제대안2		대상물질	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유해성	성물질	
	내용	자일렌	85% 이상	유해성물질에서 저	외	
		스티렌	10% 이상	10% 이상(만성유해	성만)	
		1,3-부타디엔	0.1% 이상	0.1% 이상(만성유해	성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3종물질 취급사업장은 현행 화 관법 관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 가능함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현행	o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면 환경책임 보험 가입 대상으로 사업장별 일부 비용 발생 가능성

	수준으로 안전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규제대안2	o 개정된 화관법 관리 체계에 따라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음	○ 물리적 위험성이 크고 국내 취급 량을 많아 화재·폭발과 대량 유·누 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 실제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대규모 인명·환경 피해사례가 있음 - 실제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대규모 인명·환경 피해사례가 있는 화학물질을 완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재난적 화학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전문가협의체 3차회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검사기관 등)	2024.8.27.(화) 15:00~17:00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후보물질 목록(1 4종) 함량·규정수 량 제안	산업계 여건 고려 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사고대비물 질 지정
정유·석유화학·페인트 업종 산업계 간담회 (산업계 담당자 23명)	2024. 9.26.(목) 10:00~11:30 오송&세종컨터런스회의실 대면 설명회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 우선지정 제안	물질 3종 우선 지정에 합의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전문가협의체 4차회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검사기관 등)	2024.10.8.(화) 14:00~16:00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우선 지정 물질 3종의 함량(안) 제시	함량은 현행을 유지하되, 단계 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
정유·석유화학·페인트 업종 산업계 간담회(2차) (산업계 담당자 23명)	2024.11.4.(월) 15:00~17:00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 대면 설명회	완화된 관리기준 이 적용되는 물질 중 우선 3종 물 질 지정	물질 3종 우선 지정에 합의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전문가협의체 5차회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검사기관 등)	2024.11.12.(화) 15:00~17:00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기타 완화된 관 리기준이 적용 되는 물질(11종) 등은 사고대비물 질 로드맵 용역 을 통해 재정비	사 고 대 비 물 질 로드맵 마련에 동의
규정수량 개선안 산업계 설명회 (각 산업계 담당자 28명)	2024.12.11.(수) 14:00~16:00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 설명회	사고대비물질 3 종 추가지정안 산업계 설명	물질 3종 우선 지정에 동의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전문가협의체 6차회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검사기관 등)	2024.12.12.(목) 14:00~16:00 서울비즈센터 대면회의	사고대비물질 로 드맵 마련의 세 부 내용 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사업 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화학안전정책포럼 및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협의체, 산업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 수 많은 논의를 거쳤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 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 지정을 합의함

-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으로 분류 시 현행 유독물질 중 화학 사고 위험(화재·폭발 등)이 있음에도 **인체만성유해성으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 *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 ** 취급시설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이 면제되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음
- 이에, 사고발생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 지정하고, 물질 함량기준 또한 **이해당사자 합의**에 의해 도출됨
- 3종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화관법 이행관리** (영업허가, 시설기준 등)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화학사고 위험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선제적·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합리적인 규제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대안 1을 선택
 - * 사고빈도가 잦고, 사고위험(화재·폭발, 인화성 등), 대량 유·누출사고와 누출확산성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

3. 규제목표

- 화학사고 빈도가 잦고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주민 및 환경영향이 큰 사 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
- 추가지정 대상인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은 현재에도 화관법 유해 화학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추가적인 안전설비·시설 확충이 불필요하여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은 미미하며, 화학사고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을 분류시,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자일렌) 되거나, 만성유해성으로만 분류(스티렌, 1,3-부타디엔)되나, 사고발생 위험 가능성이 큰 물질을 우선하여 3종을 추가지정함
- 3종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되더라도 현행도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관리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현행 화관법 이행사항이 동일하여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을 완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 및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과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에 따른 함량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 으며, 현행도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영업허가, 시설검사 등의 화관법 이행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판단 근거	사업장 당 일반화학물질 평균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정성적 판단
④ 대상 업종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모든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은 〈환경책임보험〉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들은 현재도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 가능 ─ 가입 의무는 없음 ○ 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등의 일반화학물질을 보험에 추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평균 33천원/년이었으며, 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보험료 인상액〉, 2021.5. 기준 자료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2021.5.6.), p.2. ○ 년간 평균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보험료가 기업 규모별로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각한 차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차등화적용 ⑥ 여부	차등화 적용 불필요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본 규정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입제한 또는 경제 제한적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화학사고위험이 높은 물질(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사고 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야하는 규정으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중 화관법 관리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사고대비물질 3종 취급사업장을 분류·규정하고 있어 유연한 분류체계를 설정
네거티브 리스트	0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에 따라 피규제자가 화관법이행 관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사고대비물질 3종을 추가지정하는 규정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대해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사고대비물질 3종을 추가지정하는 규정으로 신사업 또는 규 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더불어 화학사고 및 중대재해 등의 사고위험성 (화재·폭발, 인화성, 반응성 등)과 대량 유·누출로 인한 사업장 외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대상물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국가	대표제도	유해성 고려	물리적 위험성 고려	지정물질 수
한국	사고대비물질	0	0	97종 → 100종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환경청(US EPA) 위해관리계획 (RMP)	Ο	Ο	(PSM) 137종 (RMP) 140종
EU	세베소지침(Ⅲ)	0	0	100여종 이상
국제기준 (GHS)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조화시스템	0	0	다수(분류체계 기준)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세베소지침 등	불일치	국내 유통 물질 목록의 차이

o 타법사례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3종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법령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제1석유류	제4류 제1석유류	제1류 고압가스
산업안전보건법	0	0	0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에 속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사고위험과 대량 유·누출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93.21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				연새/	<u> </u>
규제대안 1 :	사고우	험과 대량	유·누출	사고 발	생가능성	등을 :	고려하여	사고대
비물질 3종 추	가지정	!						
영향집단		비용	2		편익		순비용	<u>.</u>
피규제 기업	직접		593.21					593.21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ᅔᇬᆌ			502 Q1					502 21
총 합계			593.21					593.21
기업순비용	<u> </u>		593.21	연간권	군등순비용			71.7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 3종 취급사업장 2,174개소는 현행 유독물질로 취급되는 사업장으로 시설기준 적용, 영업자 관리 등 화관법 이행수준은 현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 3종을 취급하는 규제대상사업장의 화관법 이행 등을 확인한 결과, 현행 화관법 이행수준과 동등하므로 현 행정자원을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화학안전정책포럼 및 이해당사자 협의체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고, 해결되지 않은 안건은 지속적인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합의안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안을 마련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을 위해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물리적위험성이 있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제안('23)
- o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4.5)
- o **화학안전정책포럼** 내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24.8~12, 4회)
- * 민·관·학(산업계, 시민사회, 환경부, 관련 전문가) 및 정책포럼 기획위원 등 20명으로 구성 ※ 사고대비물질 3종을 우선 추가지정하되, 사고대비물질 재정비 로드맵 마련('25~'27)
- 산업계 간담회(2회, '24.9, 11) 및 설명회('24.12.)
- o 사고대비물질 추가지정 전문가 검토('24.12.16)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서면 의견수렴('25.2.27~3.10)

2. 향후 평가계획

- ㅇ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 지속적 홍보 실시
- 유역·지방 환경청 및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7곳)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홍보
- * 지역별 산업계 화학안전공동체 등을 통한 업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ㅇ 개정사항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산업계 현장적용 및 이행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사고대비물질 지정고시 개정	'25.8.7. 시행

4. 종합결론

-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분류된 유해성물질(인체급성·만성·생태)로 전환 시물리적 위험성(인화성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음에도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거나 인체만성유해성으로만 분류되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고발생위험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이 필요함
- 사고위험 및 피해확대가 클 가능성이 있는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우선적으로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하여 고위험사업장이 선제적·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o 추가지정 3종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현행도 유독물질로 지정 되어 화관법 이행관리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행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위험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사고위험과 대량 유·누출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 비물질 3종 추가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593.21 593.21 · 소상공인 가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93.21 593.21 기업순비용 593.21 연간균등순비용 71.74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고위험과 대량 유·누출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추가 발생				
운영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71,742,000	71,742,000		
2026	71,742,000	68,652,632		
2027	71,742,000	65,696,298		
2028	71,742,000	62,867,271		
2029	71,742,000	60,160,068		
2030	71,742,000	57,569,443		
2031	71,742,000	55,090,376		
2032	71,742,000	52,718,063		
2033	71,742,000	50,447,907		
2034	71,742,000	48,275,509		
합계	717,420,000	593,219,567		
반복적/비균	· 등/비정률			
1. 규제비용 발생 요소 1-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환경책임	 보험 > 가입 의무 발생			
-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	종 화학물질은 개정안에 따		
라 <u>사고대비물질</u> 로 지정 예정 → <u>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u> 은 < 환				
경책임보험〉가입 의무 발생 → 〈보험료〉관련 규제비용 발생 가능				
	B 보염 가입뉼 = 98.9% (가	입내상 15302개 중 1512/개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환경	백임보험 출범 " (20245.17.),	붙임2.		
	환경책임보 운영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계 반복적/비균 1. 규제비용 1-1. 〈개정 이 〈환경책임 - 자일렌, 라 사고대 경책임보 ※ 환경책임 가입) (자료) 환경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추가 발생 운영 연도 비용 2025 71,742,000 2026 71,742,000 2027 71,742,000 2028 71,742,000 2029 71,742,000 2030 71,742,000 2031 71,742,000 2032 71,742,000 2033 71,742,000 2034 71,742,000 합계 717,420,000 반복적/비균등/비정률 1. 규제비용 발생 요소 1-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오 ○ 〈환경책임보험〉가입 의무 발생 -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 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예정 → 스 경책임보험〉가입 의무 발생 → 〈보험 ※ 환경책임보험 가입률 = 98.9% (가 가입)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675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참고〉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

- o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 (가입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 의무화
-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u>사고대비</u> 물질 취급시설 등
- o (가입현황) 가입대상 15,302개 사업장 중 <u>98.9%</u>인 15,127개소 가입('24.2)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20245.17.), 붙임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675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 1-2. 〈현행〉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 적용
- o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에서도 신규 3종 물질의 보험가 입 가능
- 〈현행〉에서도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물질 취급 시설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일반화학물질〉요율**을 적용받 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함
-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현황조사표에 일반화학물질의 물질 량을 기입할 경우, 일반화학물질 사고 시에도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함

(자료) 한경책임보험 길라잡이, 환경부 외, 2021.6., p.7.

o 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등의 물질을 보험에 추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평균 33천원/년이었으며, <u>사업장의 71.4%는 1</u> 만원 미만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보험료 인상액〉, 2021.5. 기준 자료 (〈참고 1〉 참조)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2021.5.6.), p.2. (〈참고 1〉 참조)
- o 신규 3종물질의 성상/위험도 등은 기존과 변화 없음

〈참고1〉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 신설

- o 2021.5. 이후 스티렌 등 일반화학물질 대상 보험 제도 신설
 - (2021.5.)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u>일반화학물질 요</u> 율을 신설
- 그동안에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 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 ('19.5.) 기사에서 <u>스티렌(SM, 일반화학물질)</u>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일반화학물 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u>보험료</u>가 <u>평균 3.3만 원(사업</u> <u>장</u>의 71.4%는 1만 원 미만 인상) <u>인상</u>되는 반면, 보험을 통 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 집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2021.5.6.), p.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D%99%98%EA%B2%BD%EC%B1%85%EC%9E%84%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4501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2.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산정

2-1. 피규제 대상자 개수

o 신규 지정 3종 화학물질의 개정안 주요 내용

- 〈표 A-1〉 참조

〈표 A-1〉 신규 지정 3종 화학물질의 사고대비물질 기준

대상물질	사고대비물질 지정 기준 (함량)
자일렌	85% 이상
스티렌	25% 이상
1,3-부타디엔	25% 이상

^{㈜ %}는 함량 의미

- o 피규제 대상자 개수
-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취급 사업장이 피규대상임
- 〈표 A-1〉의 기준에 따른 피규제 대상자 개수 = **2174 개**
- 피규제자 개수는 <u>1개 물질 당 1개 사업장 기준</u>임 (〈표 A-2〉 참
 조)

〈표 A-2〉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취급 사업장 현황

물질명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계
취급시설 개수 (개)	1540	570	64	2174

- ㈜ 본 규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 취급사 업장 대상
- ㈜ 피규제자 개수는 1개 물질 당 1개 사업장 기준임
- ㈜ 이들 사업장(취급시설) 중 상당수는 기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임
- (자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한경부 화학물질안전원, 2023.
- 2-2. 개정안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자 개수
- o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 취급 사업장은 모두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참고 1〉 참조
- o 개정안에 따른〈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 대상자 개수 = <u>2174 개</u> - 〈표 A-2〉참조

〈 참고 1 〉본 규제 대상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관련 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일부개정]

-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3. 31.〉
-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u>취급시설</u>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u>주요취급시설</u>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u>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u> 설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4. 2. 6.〉
 - 11. "취급시설" 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u>주요취급시설</u>"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을 제조하는 영업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 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시행일: 2025. 8. 7.] 제27조

- 2-3.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 취급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 o 이들 물질은 현재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 미 현재도 관련 보험 상품이 있음. 현재 일반화학물질의 보험 요율을 적용 받고 있음
- o 스티렌 등의 〈일반화학물질〉 요율 = 사업장 당 <u>평균 33,000 원</u>
- 평균 〈보험요율〉은 2021.5. 기준 자료가 현시점 기준 확보 가능 한 최신 자료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2021.5.6.), p.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D%99%98%EA%B2%BD%EC%B1%85%EC%9E%84%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4501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2-4. 규제비용 추산

o (가정) 신규 피규제대상자들은 기존에 환경책임보험 및 일반화학

물질 관련 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가정 → 모든 피규제자가 〈신규 사고대비물질 3종 지정〉에 따라 **새로이** 환경책임보험 가입 필요 → 규제비용 최대화

- o (가정) 신규로 사고배비물질로 지정된 3종 물질의 환경책임보험 요율은 기존의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
- 신규3종 물질은 기존 일반화학물질 보험이 적용될 때와 성상/ 위험도 등에 있어서 동일한 물질임
- o 매년별 규제비용
 - (신규 3종 관련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취급시설 수
 - × 취급시설 당 평균 보험료)
 - = 2174 개/년 × 33000 원/개
 - = 71,742,000 원/년

1. 규제비용 발생 요소

1-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o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화학물질은 개정안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예정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은 〈환경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 〈보험료〉 관련 규제비용 발생 가능
 ※ 환경책임보험 가입률 = 98.9% (가입대상 15302개 중 15127개 가입)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20245.17.), 붙임2.

근거설명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 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 Value=%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675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참고〉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대상

o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 (가입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 의무화
-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 물질 취급시설 등
- o (가입현황) 가입대상 15,302개 사업장 중 <u>98.9%</u>인 15,127개소 가입('24.2)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20245.17.), 붙임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6759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 1-2. 〈현행〉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 적용
- o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현행에서도 신규 3종 물질의 보험 가입 가능
- 〈현행〉에서도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의 3종 물질 취급 시설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일반화학물질〉요율**을 적용받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함
-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현황조사표에 일반화학물질의 물 질량을 기입할 경우, 일반화학물질 사고 시에도 보상한도 내에 서 보장 받는 것이 가능함

(자료) 한경책임보험 길라잡이, 환경부 외, 2021.6., p.7.

- o 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등의 물질을 보험에 추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평균 33천원/년이었으며, 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보험료 인상액〉, 2021.5. 기준 자료 (〈참고 1〉 참조)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2021.5.6.), p.2. (〈참고 1〉 참조)
- o 신규 3종물질의 성상/위험도 등은 기존과 변화 없음

〈참고1〉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 신설

- o 2021.5. 이후 스티렌 등 일반화학물질 대상 보험 제도 신설
- (2021.5.)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u>일반화학물질 요</u> 율을 신설
- 그동안에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 ('19.5.) 기사에서 <u>스티렌(SM, 일반화학물질)</u>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일반화학물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u>보험료</u>가 <u>평균 3.3만 원(사업장</u>의 71.4%는 1만 원 미만 인상) <u>인상</u>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 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짐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2021.5.6.), p.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D%99%98%EA%B2%BD%EC%B1%85%EC%9E%84%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4501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2.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산정

2-1. 피규제 대상자 개수

o 신규 지정 3종 화학물질의 개정안 주요 내용

- 〈표 A-1〉 참조

〈표 A-1〉 신규 지정 3종 화학물질의 사고대비물질 기준

대상물질	사고대비물질 지정 기준 (함량)
자일렌	85% 이상
스티렌	25% 이상
1,3-부타디엔	25% 이상

㈜ %는 함량 의미

- o 피규제 대상자 개수
-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취급 사업장이 피규대상임
- 〈표 A-1〉의 기준에 따른 피규제 대상자 개수 = <u>2174 개</u>
- 피규제자 개수는 <u>1개 물질 당 1개 사업장 기준</u>임 (〈표 A-2〉 참조)

〈표 A-2〉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취급 사업장 현황

물질명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계
취급시설 개수 (개)	1540	570	64	2174

- ㈜ 본 규제 개정안이 적용되는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 취급사 업장 대상
- ㈜ 피규제자 개수는 1개 물질 당 1개 사업장 기준임
- ㈜ 이들 사업장(취급시설) 중 상당수는 기존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임
- (자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한경부 화학물질안전원, 2023.
- 2-2. 개정안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대상자 개수
- o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 취급 사업장은 모두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참고 1〉 참조
- o 개정안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무가입 대상자 개수 = 2174 개
- 〈표 A-2〉 참조
 - 〈 참고 1 〉본 규제 대상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관련 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일부개정]

-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3. 31.〉
-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u>취급시설</u>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u>주요취급시설</u>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4. 2. 6.〉
 - 11. "취급시설" 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u>주요취급시설</u>"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을 제조하는 영업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 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시행일: 2025. 8. 7.] 제27조

- 2-3. 신규 사고대비물질 지정 3종 취급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 o 이들 물질은 현재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현재도 관련 보험 상품이 있음. 현재 일반화학물질의 보험 요율을 적용 받고 있음
- o 스티렌 등의 〈일반화학물질〉 요율 = 사업장 당 평균 33,000 원
- 평균 〈보험요율〉은 2021.5. 기준 자료가 현시점 기준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확대하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 "(2021.5.6.), p.2.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content&searchValue=%ED%99%98%EA%B2%BD%EC%B1%85%EC%9E%84%EB%B3%B4%ED%97%98&menuId=10525&orgCd=&boardId=14501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2-4. 규제비용 추산

- (가정) 신규 피규제대상자들은 기존에 환경책임보험 및 일반화학물질 관련 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가정 → 모든 피규제자가 〈신규 사고대비물질 3종 지정〉에 따라 새로이 환경책임보험 가입 필요 → 규제비용 최대화
- o (가정) 신규로 사고배비물질로 지정된 3종 물질의 환경책임보 험 요율은 기존의 일반화학물질 보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
- 신규3종 물질은 기존 일반화학물질 보험이 적용될 때와 성상/ 위험도 등에 있어서 동일한 물질임

o 매년별 규제비용
_ (신규 3종 관련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취급시설 수
× 취급시설 당 평균 보험료)
= 2174 개/년 × 33000 원/개
= 71,742,000 원/년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다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3종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			
ᅵ 완ᅩ제ᅩ ᅵ	하에 따른 국민들의 환경안전 제고			
편익항목 기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	반복적			
근거설명	한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편입에 따른 피해자 배상 강화 일정 함량 이상의 자일렌·스티렌·1,3-부타디엔 3종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들 물질들을 취급하는 시설들은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편입됨. 이에따라 화학사고 등 발생 시 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배상이 가능해짐 다만,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시의 피해 규모를 명확히특정하기 어려운 등, 편익 발생 요소들에 따른 일반국민 편익을화폐화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정성분석 시행			